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3 - 144

나. 발 의 자: 박성호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3.)

2. 제안이유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물의 구입·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의함(안 별표1의 제3호, 제4호 다목)

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함(안 별표 1의 제4호 라목)

다. 기타 자구 수정(안 별표 1)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별표 1의 제3호, 제4호 다목
 - 선물의 구입·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의함
- 안 별표 1의 제4호 라목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함(안 별표 1의 제4호 라목)
- 기타 자구 수정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지난 9월 접수된 바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이 포함되었으며,
둘째, 농수산물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만 원의 한도를 15만 원으로 늘렸으며, 예외적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그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